

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제4호”를 “제1항제4호 및 제8호”로 한다.

8. 조속한 폐광의 축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

제4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30조의2제8호에 따른 지원사업 관련 지원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급

제45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조속한 폐광의 축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의2(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)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삭제 2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 · 기준 ·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	제30조의2(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) ①----- ----- -----. 2. ~ 7. (현행과 같음) 8. 조속한 폐광의 추진을 위한 <u>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</u> ②----- 제1항 제4호 및 제8호----- ----- ----- -----.
제4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제30조의2제8호에 따른 지원 <u>사업 관련 지원 신청의 접수,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급</u>
제4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특별자치	제4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

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
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
·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
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
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
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
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
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
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
조속한 폐광의 축진을 위한
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
사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62